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25 선고 2021가합5045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

담당변호사 유병일, 전수려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4. D 주식회사

변론 종결2023. 3. 14.

판결 선고2023. 4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,858,690,074원 및 그중 4,758,984,743원에 대하여 2006. 3. 1.부터 2011. 3. 17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20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. 6. 30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,710,649,691원, 채무자 주식회사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주식회사 A, C, D 주식회사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B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판사박준민

판사최지은

판사김다연

별지